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6] <개정 2019. 8. 16.>

행정처분의 기준(제2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 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

다.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의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제17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행정처분의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위반
가. 혈액원 개설허가를	법 제17	허가취소		
받은 날부터 3개월이	조의2제1			
지나도록 정당한 사유	항제1호			
없이 그 업무를 시작				
하지 아니한 경우				
나. 개설허가를 받은	법 제17	시정명령	업무정지	허가취소
혈액원의 시설이 법	조의2제1		6개월	
제6조제2항에 따른 시	항제2호			
설·장비 기준에 적합하				
지 아니한 경우				
다. 혈액원이 제조관리	법 제17	업무정지	업무정지	허가취소

자를 두지 아니한 경		3개월	6개월	
우	항제3호			
라. 혈액원에 대한 법	법 제17	시정명령	업무정지	업무정지
제13조제1항에 따른	조의2제1		3개월	6개월
검사 또는 같은 조 제	항제4호			
3항에 따른 심사평가				
결과 혈액관리업무가				
부적절하였음이 발견				
된 경우				
마. 그 밖에 법 또는	법 제17			
법에 따른 명령을 위	조의2제1			
반한 경우	항제5호			
1) 법 제6조의4제1		시정명령	업무정지	업무정지
항에 따른 휴업 또는			3개월	6개월
재개업 신고를 하지				
아니한 경우				
2) 폐업 또는 휴업		시정명령	업무정지	업무정지
신고 시 법 제6조의4			3개월	6개월
제2항에 따라 혈액관				
리업무기록 등을 대한				
적십자사 회장에게 이				
관하지 아니한 경우				
3) 업무정지 명령을		업무정지	허가취소	
위반하여 업무를 한		6개월		
경우				
4) 시정명령에 따르		업무정지	업무정지	업무정지
지 아니한 경우		1개월	3개월	6개월